

국제간호도덕규약

(1953년 7월 10일 브라질, 사오, 파우로에서
개최된 제 10회 국제간호협회에서 채택 됨)

환자에게 봉사하는 전문간호원은 회복을 돕는 육체적, 사회적 또는 정신적 환경을 창설하고 교시와 실례로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할 책무가 있다. 그들은 개인, 한 가족 또는 한 사회에 대하여 보건봉사를 할 것이며 다른 보건사업가들과 협조 할 것이다.

인류에 대한 봉사는 간호원들의 기본적무이며, 간호사업의 존재 이유가 된다. 간호사업은 전세계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국가, 민족, 주의사상, 인류, 정치 또는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차규약의 내용은 간호원이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인식하고 인명의 보존을 원하는 근본 개념이 된다.

차규약은 간호원들의 모든 활동범위와 그의 관계를 자세히 망라할 수는 없다. 그중 어느 것은 개인철학과 신념으로 인하여 좌우되는 것이 있다.

1. 간호원의 근본의 무는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 고통을 경감하는 것. 그리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의 세가지이다.
2. 간호원은 언제나 최고수준의 간호법과 전문적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간호원은 그 직무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뿐만 아니라 그의 지식과 기술을 항상 최고도로 유지하여야만 한다.
4. 환자의 종교적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
5. 간호원은 그들에게 맞춰진 모든 개인비밀을 지켜야한다.
6. 간호원은 그의 책무를 인식할뿐만 아니라 그의 직무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긴급시에 한하여만 의사의 명령없이 치료나 원고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조속한 시간내에 의사에게 보고 한다.
7. 간호원은 의사의 명령을 종명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부도덕한 행위에는 관여를 거절할 책무를 갖는다.
8. 간호원은 의사와 다른 보건직원들의 신뢰를 지지한다. 동료들의 부정 또는 부도덕행위는 해당당국에 진술되어야 한다. (20P. 계속)